

부산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단333721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고1. 주식회사 B

2. C

3. D

변론 종결2021. 3. 25.

판결 선고2021. 4. 15.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830,601원과 이에 대한 2020. 7. 9.부터 2020. 8. 7.까지는 연 6%, 2020. 8. 8.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9%, 2020.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이 2020. 6. 8. 피고 C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20,237,426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D은 원고에게 20,337,426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회사가 별지 청구원인 제1. 가. 나.항과 같이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후 별지 청구원인 제2. 항과 같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20. 7. 8. E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72,830,61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은 2020. 6. 8.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과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과 시가 약 4,000,000원 상당의 선박 하나만을 소유하고 있는 외에 별다른 가치 있는 재산이 없었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34,000,000원, 실채무액 192,625,733원의 근저당채무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은행장,

F은행장에 대한 각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울산시장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터 잡아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불과 한 달 후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 C이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채무자인 위 피고의 사해의사도 넉넉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된다.

(3)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95,000,000원 상당인 사실, 피고 D은 이 사건 계약 후인 2020. 7. 1. F에 대한 근저당채무 192,625,733원을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395,000,000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192,625,733원을 공제한 잔액인 202,374,267원 중 피고 C의 지분에 해당하는 20,237,426원($202,374,267\text{원} \times 1/10$, 원미만 버림)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0,237,426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금덕희

별지